



www.trithucviet.com.vn

Member of
Allinial
GLOBAL®
An association of legally independent firms

TRI THỨC VIỆT (TTV)

유한책임회사

월간 법령 뉴스레터

2026년 7월



WWW.TRITHUCVIET.GROUP



INFO@TRITHUCVIET.COM.VN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2.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3. 시행령 제255/2026/NĐ-CP호 — 특수관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4.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 세무등록에 관한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5. 시행규칙 제87/2026/TT-BTC호 —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시행 안내(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6.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7.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제2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제3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 행정위반 처분 (공포일: 2026.07.15; 시행일: 2026.09.10)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74/2026/NĐ-CP호 — 사업투자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2. 시행령 제248/2026/NĐ-CP호 — 전자상거래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3.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 업무 규정(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8)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되는 체납세액 기준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일시정지는 다음 5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강제징수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가구주로서 체납세액이 5,000만 동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초과한 경우.
- (2) 강제징수 대상인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실질소유자 또는 법적대표자로서 체납세액이 5억 동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초과한 경우.
- (3) 납세자가 등록주소지를 이탈한 후 120일이 지나도록 복구하지 않거나 세무번호를 종료한 경우.
- (4) 외국인 개인이 납세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5)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출국 일시정지는 납세자의 체납세액이 규정된 기준액(즉 개인·사업가구는 5,000만 동, 기업·협동조합은 5억 동) 미만으로 감소하는 즉시 해제됩니다. 이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출국 일시정지가 해제되던 종전 시행령 제49/2025/NĐ-CP호의 규정과 달라진 점입니다. 외국인 및 출국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체납세액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출국 일시정지가 해제됩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납부기한 90일 초과 시 체납자 정보 자동 공개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4조 제3항 c목 및 제5항 c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기한 또는 세무관리 관련 행정결정의 이행기한으로부터 9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납세자 또는 보증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이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자 정보를 자동 공개합니다. 납세자의 개인식별정보,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정보 안전에 관한 법령 준수를 위하여 가림 처리 또는 익명화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 대리 납세 의무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국내 및 국외)는 자사 플랫폼에서의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대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 판매자(사업가구, 개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사업가구·개인사업자의 국내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별로 원천징수 및 대리 납부.

- 개인소득세: 거주자의 국내외 매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 매출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대리 납부.

- **판매자가 외국 공급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대리 납부.**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원천징수 시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래 성공을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시점입니다. 세액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한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월 단위로 신고하며, 취소·반품된 거래의 세액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대리 납부를 받은 경우, 해당 매출분에 대하여 판매자가 다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등록 및 세무신고 기한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세무당국에 직접 세무등록을 하는 납세자의 최초 세무등록 기한을 의무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로 규정하며, 개인의 부양가족 등록은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등록은 전자적으로 또는 원스톱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2/2026/ND-CP호 —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신고 유형	서류 제출기한
발생 건별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월별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
연간	다음 역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첫 달의 말일.
연간 확정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개인 직접 확정신고	역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종료·해산·파산·분할·합병	결정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추가된 과세대상 소득:

-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7조 제6항)
- + 국가 도메인 “.vn” 양도 소득,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탄소배출권 양도 소득, 경매 낙찰 차량번호판 양도 소득. 이러한 소득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양도 건별로 수령한 금액 중 2,000만 동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16조 제1·2·3항 및 제62조 제1항)
- + 디지털자산(법령에 따른 가상자산, 암호화자산 및 기타 디지털자산 포함) 양도 소득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16조 제4항 및 제62조 제2항)
- +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주택임차료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개인의 과세소득에 산입되며, 해당 사업장 총 과세소득(주택임차료 제외)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8조 제2항 h목)

- 의료비 및 교육·훈련비의 개인소득세 공제: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인 납세자는 임금·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 전 과세소득에서 의료비를 연간 최대 2,300만 동까지, 교육·훈련비를 연간 최대 2,400만 동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세금계산서·증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53/2026/ND-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개인소득세 면세·불산입 및 감면 항목 추가:

- 근로자의 경우:

- → 고품질 디지털기술 산업 인력 및 첨단기술 인력인 개인이 시행령 제253/2026/ND-CP호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프로젝트·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5년간 면세됩니다.
- →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수당·실직수당 부분은, 그 초과 지급이 기업의 재무규정, 내부규정,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53/2026/ND-CP호 제8조 제3항 h목)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대 식대·중식대가 1인당 월 120만 동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53/2026/ND-CP호 제8조 제2항 g목)

→ 근로자가 노동법령에 부합하게 미사용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급여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253/2026/ND-CP호 제26조 제2항)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개인소득세 면세·불산입 및 감면 항목 추가:

- 투자자의 경우:

- →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탄소배출권의 최초 양도 소득, 녹색채권 이자, 발행 후 최초 녹색채권 양도 소득(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은 면세됩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34조)
- → 개인투자자가 혁신창업 프로젝트에 출자한 소득, 혁신창업기업 창업자의 소득,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한 소득은 면세됩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37조)
- → 투자자가 매도 시점에 매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개방형펀드 수익증권 양도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2026년 7월 1일 이전에 매입하였으나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매도하는 수익증권 포함).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43조)

→ 투자자가 증권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펀드로부터 분배받는 배당소득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 까지 5년간 개인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44조)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비정기·일시 소득에 대한 10% 원천징수 기준액 상향: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50조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10%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임금·급여·보수·기타 지급금 금액을 1회당 200만 동에서 1회당 500만 동으로 상향하였습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개인의 총 과세소득을 가족공제 후에 추정한 결과 납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 지급기관에 확약서를 제출하여 일시적으로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령 제255/2026/ND-CP호 — 특수관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2026년 법인세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과 독립거래가격의 비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하 “독립거래가격 비교법”이라 함)의 적용 대상

납세자가 시장에서 거래·유통 조건이 일반적이거나 국내외 상품·서비스 거래소에 가격이 공시되는 각 품목의 재화, 유형자산,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무형자산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 거래, 차입 및 대여 활동에서의 이자 지급, 또는 납세자가 제품 특성과 계약조건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독립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령 제255/2026/ND-CP호 — 특수관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적용 원칙:

+ 독립거래가격 비교법은 독립거래가격과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비교할 때 제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한 차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 제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특성, 품질, 브랜드, 상표 및 거래 규모·수량; 제품의 공급·이전 계약조건; 이전 수량, 이전 기한, 결제 기한 및 기타 계약조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서비스·자산의 유통·판매권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과 사업 기능 등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령 제255/2026/ND-CP호 — 특수관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산정 방법:

+ 특수관계자 거래의 제품 가격은 시행령 제255/2026/ND-CP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거래의 제품 가격 또는 독립 비교대상의 정상가격 범위 내 값으로 조정됩니다.

+ 국내외 상품·서비스 거래소에 제품 가격이 공시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제품 가격은 시점 및 거래조건이 유사한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시점에 해당 기계·설비의 매입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품 기계·설비의 경우 비교가격은 특수관계자가 독립기업으로부터 해당 기계·설비를 매입한 송장가격이며, 중고 기계·설비의 경우 매입 시점의 원본 송장·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관리·사용 및 감가상각에 관한 현행 법령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산정 결과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가격이 되며, 납세자가 국가에 산에 납부해야 할 세무의무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4.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 세무등록에 관한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납세자 세무등록 서식 21종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등록 서식은 다음 21종입니다.

서식 01-ĐKT: 세무등록 신고서(10자리 세무번호 부여 대상 조직용)

서식 02-ĐKT: 세무등록 신고서(13자리 세무번호 부여 대상인 종속단위, 사업장, 직접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타 조직용)

서식 03-ĐKT: 세무등록 신고서(사업가구, 개인사업자용)

서식 04-ĐKT: 세무등록 신고서(외국계약자, 외국하도급자/컨소시엄 운영위원회용)

서식 04.1-ĐKT: 세무등록 신고서(세액을 원천징수·대리 납부하는 조직·개인용)

서식 04.4-ĐKT: 세무등록 신고서(수납위탁 조직용)

서식 BK01-ĐKT: 자회사·계열사 명세서

서식 BK02-ĐKT: 종속단위 명세서

서식 BK03-ĐKT: 사업장 명세서

서식 BK04-ĐKT: 외국계약자·외국하도급자 명세서

서식 BK04.1-ĐKT: 베트남 측을 통해 납세하는 외국계약자·외국하도급자 계약 명세서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4.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 세무등록에 관한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서식 BK05-ĐKT: 석유가스 계약자·투자자 명세서

서식 BK06-ĐKT: 조직·개인의 출자 명세서

서식 BK07-ĐKT: 베트남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법적 소유주 및 실질소유자 명세서

서식 05-ĐKT: 세무등록 신고서(비사업 개인이 직접 세무등록하는 경우용)

서식 05-ĐKT-TH: 임금·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의 통합 세무등록 신고서(위임받은 개인을 대신하여 소득 지급기관이 등록하는 경우용)

서식 07/XN-NPT-TNCN: 직접 부양해야 하는 자에 관한 신고 명세서

서식 20-ĐKT: 세무등록 신고서(임금·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세무등록하거나 부양가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용)

서식 20-ĐKT-TH: 임금·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의 부양가족 통합 세무등록 신고서(위임받은 부양가족의 등록·정보변경을 소득 지급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용)

서식 06-ĐKT: 세무등록 신고서(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대표기관용)

서식 01/NCCNN: 세무등록 신고서(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국세청의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용)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5. 시행규칙 제87/2026/TT-BTC호 —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253/2026/ND-CP호 시행 안내(재정 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납세자의 자녀 부양가족 확인 서류

- (i) 친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부·모·자 인지 결정서 사본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권한기관의 문서, 그리고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 자녀의 신분증 사본
- (ii) 양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 자녀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입양 인정 결정서/입양 증명서 사본
- (iii)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 자녀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납세자의 혼인증명서 사본 또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권한기관이 발급한 기타 서류
- (iv) 만 18세 이상으로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i)(ii)(iii)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 관계 증명 서류 외에, 법령에 따른 민사행위능력 상실 확인서 사본 또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 확인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v) 대학교, 전문대학, 중등전문학교 또는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12학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시험 결과 대기 기간을 포함하여,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 포함)의 경우: (i)(ii)(iii)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 관계 증명 서류 외에, 학생증 사본 또는 학교의 확인을 받은 신고서 또는 대학교·전문대학·중등전문학교·고등학교 재학 또는 직업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6.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수출입 물품의 체납세액 분할납부 기간 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는 수출입 물품의 체납세액 분할납부 기간 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2026년 6월 30일, 재정부장관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65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다음 한도에 따라 분할납부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 분할납부 기간 최대 3개월.
- 10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 분할납부 기간 최대 6개월.
- 20억 동 이상: 분할납부 기간 최대 12개월.

상기 분할납부 기간은 권한기관이 승인 문서를 발급한 날부터 기산하며, 보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분할납부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납세자가 의무(체납세액 및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 포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 신용기관은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65조 제2항 b목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6.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에 첨부하여 공포된 부록 II의 서식 제17호 또는 부록 I의 서식 제47호에 따른 납세자의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 공문
 -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세액에 대한 신용기관의 보증서. 전자보증인 경우 납세자는 보증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처리기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부터)
- 1영업일: 관세지국 소속 팀이 처리하는 서류.
 - 2영업일: 지역 관세지국장 또는 관세국 소속 전담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서류.
 - 3영업일: 관세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서류.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7.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2026년 6월 30일, 재정부장관은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는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기업의 선정·변경·종료 기준, 서류 및 절차.
- 부가가치세 환급 대리점 역할을 하는 상업은행의 선정·종료 기준 및 절차; 국제공항·국제항만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의 선정·일시중지·종료.
-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시스템상의 정보 접근·교환·연계에 관한 규정.
- 물품 검사 장소, 환급신고서 검용 세금계산서 검사 장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장소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 환급 이행과 관련된 기관·조직·개인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7.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재정부장관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시행규칙 제84/2026/TT-BTC호 제4조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출국 시 휴대하는 경우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1)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부록 IV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베트남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세무 관련 의무와 권익을 이행하기 위한 안내 및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 구매 시 판매기업이 작성한 환급신고서 겸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구매 시 판매기업에 제시하는 여권 및 국제 여행증명서, 출국 시 세관에 제시하는 여권·국제 여행증명서·물품·환급신고서 겸용 세금계산서, 그리고 환급 대리 상업은행에 제시하는 서류의 정확성·적법성·진실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
- (5)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 전 세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늦어도 30분 전까지 환급신고서 겸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 (6) 자신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행정결정·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세관공무원·세무공무원 및 기타 관련 조직·개인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금전등록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확대: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6조 제1항 c목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금전등록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매업(자동차·모터사이클·오토바이 및 기타 동력차량 제외), 요식업, 음식점, 호텔, 여객운송 서비스, 도로운송 직접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유흥 서비스, 영화 상영 활동, 베트남 경제 산업분류 체계상의 기타 개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다만, 경제조직·사업가구·개인사업자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금전등록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별도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가구·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7조는 사업가구·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조직·개인에게 오락, 전자게임, 디지털 영상,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콘텐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 그리고 복권 대리점·보험 대리점·다단계판매 대리점으로서 복권·보험·다단계판매 기업이 조세관리 법령에 따라 이미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점은 부동산 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2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야간에 발생한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영업일에 발행할 수 있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노동법상 야간 근로시간(즉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에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판매자에게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늦어도 다음 영업일입니다.

-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수령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시점(외국 조직·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포함)이며,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과정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 시점입니다. 다만, 민법상 서비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부록에 따라, 구매자가 재화·서비스 구매 시 성명,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 정보를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세금계산서에 “소비자에게 판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 정보가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조직·기업·사업가구 또는 개인사업자가 비용 계상 또는 세무 확정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조세관리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판매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000만 동 포상금 지급: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자가 재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로 신고하고, 그 신고를 근거로 세무당국이 판매자에 대하여 조세·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분 결정을 발급한 경우, 신고자는 행정처분 금액의 최대 10% 또는 1건당 최대 1,000만 동 of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인쇄 주문 세금계산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 효력 상실: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세무당국의 인쇄 주문 세금계산서는 전부 사용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당 인쇄 주문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세무당국·경제조직·조직·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재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제3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 행정위반 처분 (공포일: 2026.07.15; 시행일: 2026.09.10)

2026년 7월 15일, 정부는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의 행정위반 처분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83/2026/NĐ-CP호는 다음 분야에서의 행정위반 행위, 처분 형태, 처분 수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 행정위반 조서 작성 권한, 행정처분 권한, 행정처분의 집행 및 결과 시정 조치를 규정합니다.

- 노동 분야: 일자리, 채용 및 노무관리;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근로자대표조직

- 사회보험 분야

-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

예를 들어,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11조는 채용·노무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는 100만 동부터 300만 동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규정에 따른 노동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채용에 응시한 근로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노무관리대장에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때 노무관리대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3부: 노동 ·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 행정위반 처분 (공포일: 2026.07.15; 시행일: 2026.09.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직·개인에게는 500만 동부터 1,000만 동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노동에서의 차별행위(다만,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d목, 제34조 제2항,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차별행위는 제외)
 -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국가직무능력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업무에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국가직무능력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 규정에 따른 노동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노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거나, 법령상 기본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형사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기만할 목적 또는 착취·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유인, 회유, 약속, 허위 광고 또는 기타 수법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5,000만 동부터 7,500만 동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결과 시정 조치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11조 제1항 b목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74/2026/NĐ-CP호 — 사업투자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사업투자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 시 우대 대상

2026년 7월 7일, 정부는 사업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274/2026/NĐ-CP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 대상과 우대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환경보호 법령상 환경에 대한 악영향 위험이 높은 등급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기술, 첨단기술, 친환경기술 및 최고 가용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갖춘 투자자는 입찰서류 평가 시 5%의 우대를 받습니다.

- 첨단기술 법령에 따라 총리가 공포한 「우선 투자·육성 첨단기술 목록」 및 「육성 장려 첨단기술제품 목록」에 속하거나, 기술이전 법령상 「이전 장려 기술 목록」에 속하거나, 첨단기술 법령상 전략기술 목록에 속하는 첨단기술·첨단기술제품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약정하거나 첨단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입찰서류 평가 시 2%의 우대를 받습니다.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1. 시행령 제274/2026/ND-CP호 — 사업투자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 (공포 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 과학기술기업, 권한기관이 인정한 혁신창업기업 및 혁신창업지원기관, 혁신센터, 전략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 첨단기술 인큐베팅 기관 및 첨단기술기업 인큐베팅 기관인 투자자는 첨단기술 법령에 따라 입찰서류 평가 시 5%의 우대를 받습니다.

- 국내 투자자 또는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외국 투자자는 입찰서류 평가 시 2%의 우대를 받습니다.

입찰 참가 시 투자자는 상기 우대를 받기 위하여 선진기술·첨단기술·친환경기술·최고 가용기술 적용 방안 및 첨단기술·기술이전·환경보호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술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48/2026/ND-CP호 — 전자상거래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개하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 248/2026/ND-CP호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 + 운영 조건 및 거래 조건의 제정·공개 및 이행
- + 서비스 기준 및 플랫폼 활동 참여 절차의 수립·공개
- + 공개된 가격 정책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징수
- + 구매자가 주문하기 전에 적용되는 판촉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전부 또는 요약하여 제공
- + 플랫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보장
- + 판매자·구매자 계정의 일시중지·종료·제한 사유 규정
- + 이용자의 영업비밀 및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 적용
- + 이용자의 요구·의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 위법행위 감시·차단, 관계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정보·데이터 협조 제공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2. 시행령 제248/2026/NĐ-CP호 — 전자상거래법 시행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 + 재화 판매·서비스 제공 활동을 등록·유지·일시중지·종료할 수 있으며, 법령 및 플랫폼 운영자와의 합의에 따라 재화·서비스, 판매가격 및 판촉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플랫폼의 기술 인프라와 지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금을 전액·기한 내에 지급받고 공개·투명 원칙에 따라 요구·의견·이의신청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화·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인도·보증·교환반품·환불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영업이 금지된 업종, 위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거래 및 기타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국가에 대한 재무의무를 이행하고, 구매자의 데이터와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며, 위법행위 처리에 있어 플랫폼 운영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

-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 +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으며, 재화·서비스 및 판매자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 재화·서비스, 결제 방식 및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규정에 따라 의견·요구·이의신청을 처리받습니다.
- +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전액·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 법령과 플랫폼의 운영 조건·거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48/2026/NĐ-CP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인증할 책임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 업무 규정(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8)

해외투자 목적 대출 요건

이에 따라 신용기관은 고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투자 목적 대출을 검토·결정합니다.

- (1) 고객이 법인인 경우 법령에 따른 민사권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투자 법령에 따라 해외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 (2) 해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외환 법령에 따라 해외투자 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 등록을 확인받았어야 합니다(해외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 (3) 투자 활동이 투자유치국의 권한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투자유치국의 법령이 투자 허가 또는 투자 승인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의 투자 활동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4) 신용기관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며, 고객이 신용기관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5) 대출 신청 시점 직전 24개월 동안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3.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 업무 규정(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공포)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8)

해외투자 목적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대출 수요, 해외투자 프로젝트, 고객의 재무 능력, 고객에 대한 여신 한도 및 신용기관의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신용기관과 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단일 신용기관의 대출계약/약정상 최대 대출 약정 한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의 해외투자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동일한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의 신용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 신용기관의 대출계약/약정상 대출 약정 총액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의 해외투자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www.trithucviet.com.vn

Member of
Allinial
GLOBAL.
An association of legally independent firms

총정리

2026년 7월에는 조세, 전자세금계산서, 노동-보험 및 기업-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중요한 신규 정책이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세무관리 및 체납세액 처리, 개인소득세,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등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금전등록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확대, 노동·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투자자 선정 시 우대,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및 해외투자 목적 대출 규정이 주목됩니다.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호치민:

- 835A Binh Duong 대로, Chanh Hiep동, 호치민시
전화: (0274) – 3856 219
이메일: info@trithucviet.com.vn
- 9 Phan Ke Binh 3층, Tan Dinh동, 호치민시
전화: (028) – 39118 830
이메일: hcm@trithucviet.com.vn

하노이:

- 15 Ngo 2, Tho Thap, Cau Giay동, 하노이시
이메일: hanoi@trithucviet.com.vn



카인호아 (Khanh Hoa):

- 220 Truong Chinh, Ninh Chu동, 카인호아
핫라인: 0918 757 239

잘라이 (Gia Lai):

- 123D Tran Hung Dao, Quy Nhon동, 잘라이
핫라인: 0935 003 125

